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01
----------	-------

발의연월일 : 2025. 6. 26.

발 의 자 : 정연욱 · 김미애 · 박충권
조경태 · 김태호 · 이성권
배현진 · 박정훈 · 진종오
서지영 · 서범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스포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이스포츠팀 창단·운영 지원, 학교 이스포츠 활동 및 관련 진로 교육 활성화 등과 같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 진흥 범위와 내용을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방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2.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3. 이스포츠팀의 창단 및 운영
4. 이스포츠 대회 개최
5.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활동과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u>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u>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 ----- ----- ----- -다음 각 호의 사업을----- ----- ----- -----.
<u><신 설></u>	1. <u>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u>
<u><신 설></u>	2. <u>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u>
<u><신 설></u>	3. <u>이스포츠팀의 창단 및 운영</u>
<u><신 설></u>	4. <u>이스포츠 대회의 개최</u>
<u><신 설></u>	5. <u>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활동과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u>